

한국전자거래학회 운영규정

제 1 장 목 적

제 1 조(목적) 본 규칙은 정관 제30조에 의하여 정관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회 및 퇴회

제 2 조(입회 신청 절차) 1. 정회원 및 학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1인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 입회비, 당해연도 회비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한다.
2.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은 소정의 입회원서, 당해연도 회비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한다.

제 3 조(회원자격 인정 절차) 1. 정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및 학생회원 입회신청자는 회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이 된다.
2. 정회원으로서 종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종신회원이 된다.

제 4 조(회원의 퇴회 절차) 회원으로서 퇴회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까지의 회비를 완납한 후, 퇴회원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비

제 5 조(회비의 납부 의무) 1. 정회원, 단체회원, 학생회원, 및 종신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신입회원은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단, 단체회원은 입회비를 별도로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 6 조(회비의 결정) 1. 본회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의 액수는 당해연도 정기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되며, 종신회비는 당해연도 회비의 10배로 한다.

제 7 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 및 종신회원은 정관 및 각종규칙의 정한 바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갖는다.
2. 학생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3. 단체회원은 별도의 회원자격은 부여하지 아니하고 각종 문헌만을 제공한다.

제 8 조(회비의 납기)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의 회비는 전년12월말까지 납입해야 한다.

제 9 조(회비체납회원에 대한 처분) 본회 회원이 3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회지를 받을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1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 처분할 수 있다.

제 10 조(기납금품의 불반환) 회원은 기납한 회비 및 기증 물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4 장 회 무

제 11 조(이사회의 사무분장) 회장은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을 선정하여 총무, 재무, 기획, 편집, 학술, 홍보, 교육, 사업, 국제, 산학 및 회원관리 직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총무이사는 인사문서 및 기타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과 금전출납, 재산관리,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재무이사는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 광고모금에 관한 사항,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편집이사는 회지 및 논문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학술이사는 강연, 세미나 및 학술심포지움 등의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 홍보이사는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6. 교육이사는 회원과 대외교육 활동사항을 관장한다.
7. 사업이사는 정관에 명시한 부대사업을 관장한다.
8. 국제이사는 국제협력업무를 관장한다.
9. 산학이사는 산업체, 학계, 연구계, 그리고 정부와 관계되는 사항을 관장한다.
10. 회원관리이사는 회원의 관리에 관계되는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 12 조(상임 이사회) 1. 회장은 전조의 1~10항의 이사 중에서 각 1명의 회무이사를 임명하여 상임이사회를 구성한다.

2.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긴급한 중요 안건을 처리한다.
3. 상임 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 조(상근 직원) 본회에는 사무를 집행하는 상근 직원을 두고, 이의 시행 상 필요한 사무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위 원 회

제 14 조(위원회의 설치) 본회에는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은 각 위원회에서 결정하나 신속하게 차기 이사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전문연구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산학협동위원회
4. 기타 행사 및 사업수행을 위한 임시위원회를 둔다.

제 15 조(위원회 규칙) 위원회의 목적, 구성 및 의결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고 문 운 영

제 16 조(고문 운영) 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임한다.

제 7 장 회 지

제 17 조(회지 발간) 본회는 년 4회 이상의 학회(논문)지를 발간한다.

제 18 조(회지 배부) 학회지는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본 규칙은 1998년 2월 23일 개정하여 시행된다.
3. 본 규칙은 2000년 2월 23일 개정하여 시행된다.
4. 본 규칙은 2004년 3월 30일 개정하여 시행된다.

한국전자거래학회 지부 설치 규정

-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학회 정관 제30조에 의거하여 지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임무)** 지부는 학회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회원간의 상호친목을 도모는 물론 본회와의 유기적인 회무연계에 있다.
- 제 3 조(설치)** 1. 해당지부 관할지역의 거주하는 정회원 15인 이상으로 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
2. 회장은 요건을 구비하여 지부설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 제 4 조(회원자격)** 지부회원은 한국전자거래학회의 회원으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자로 한다.
- 제 5 조(기구)** 지부는 원활한 회무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 제 6 조(총회)** 1.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정기총회는 매년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겸한다.
- 제 7 조(임원구성 및 직무)** 1. 지부임원은 지부장 1인, 부지부장 2인, 감사 2인, 지부이사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2.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업무를 총괄한다.
3.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지부이사는 임명된 직분을 수행하며 지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처리한다.
- 제 8 조(임원선출)** 1. 지부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방법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한다.
2. 기타 임원은 지부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 제 9 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지부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 10 조(사업)** 지부장은 본규정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간 사업계획 및 실적과 예산 결산을 정기총회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얻어 수행해야 한다.
- 제 11 조(재정)** 지부재정은 본회 운영규칙에 규정된 재원과 본회에서 승인된 지부 사업의 수입금과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제 12 조(사업보고)** 지부장은 본회 정기총회 전이사회에 연간 활동사항(계획실적) 및 경비수지(예산 결산)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3 조(회칙제정)** 각 지부의 회칙은 별도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제 14 조(해산)** 1. 지부의 해산은 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 이사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즉시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지부 활동이 부진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시킬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6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한국전자거래학회 편집위원회 설치 규정

- 제 1 조**(목적) 본 규칙은 학회 정관 제30조 및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임무) 편집위원회는 정관에서 규정한 학회(논문)지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다.
- 제 3 조**(설치) 편집위원회는 정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 4 조**(편집위원회 구성) 연구회는 다음과 같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 1인.
 2. 간사 : 2인 이내.
 3. 편집위원 : 8인 이상.
- 제 5 조**(편집위원의 선출 및 임기)
1. 편집위원의 선출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6 조**(재정) 편집위원회 재정은 학회에서 관리한다.
- 제 7 조**(사업 보고)편집위원장은 본회 정기총회 전 이사회에 연간 활동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04년 9 월 10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한국전자거래학회 전문 연구위원회 설치 규정

- 제 1 조(목적)** 본 규칙은 학회 정관 제30조 및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전문연구위원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임무)** 연구회는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다.
- 제 3 조(설치)** 1. 연구회는 정회원 2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연구회의 구성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4 조(회원자격)** 본학회 회원은 본인의 원에 따라 관심있는 연구회에 소속할 수 있다.
- 제 5 조(기구)** 연구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 제 6 조(운영위원회 구성)** 연구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 운영위원장 : 1인
2. 부위원장 : 3인 이내.
3. 운영 위원 : 10인 이내.
4. 감사 : 2인 이내.
- 제 7 조(운영위원의 선출 및 임기)** 1.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연구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8 조(사업 운영)** 연구회에서 토의 결의된 사업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
- 제 9 조(재정)** 1. 연구회 재정은 연구회 회원의 일정회비, 학회 지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2. 자금관리는 학회에서 총괄한다.
- 제 10 조(사업 보고)** 운영위원장은 본회 정기총회 전 이사회에 연간 활동사항(실적, 계획) 및 경비수지(예산,결산) 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1 조(회칙 제정)** 각 연구회 회칙은 별도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제 12 조(해산)** 1. 연구회 해산은 운영위원회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장은 즉시 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연구회 활동이 부진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시킬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1998년 2월 23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3. 이 규칙은 2004년 3월 30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4. 이 규칙은 2010년 11월 4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포 상 규 정

-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e-비즈니스 분야의 학술발전과 기술향상을 장려하기 위한 회원, 단체 및 관련인사의 포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상의 종류)** 상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학술상 2. 기술상 3. 공로상
- 제 3 조(수상자격)** 1. 학술상: e-비즈니스 관련분야에서 다년간 창의성을 발휘하여 논문 발표 및 우수한 저서를 집필하여 e-비즈니스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고 인정되는 회원
2. 기술상 : e-비즈니스 의 독창적인 응용기술과 연구개발로 관련 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 과 객관성 있는 공적이 현저한 인사 및 단체
3. 공로상: 학회 및 e-비즈니스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인사 및 단체
- 제 4 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회장단, 지부장, 편집위원장, 분과연구회 위원장, 특별회 원기관 대표자 또는 정회원 5인 이상이 추천할 수 있다.
- 제 5 조(추천 서류)** 적정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 할 시에는 다음의 추천서류를 구비하여 회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추천서1통 (소정양식)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제 6 조(포상위원회)**1. 포상위원회는 회장이 추천하는 1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포상위원회에서는 수상후보자를 선정한 후 이사회에 추천한다.
3. 수상후보자 심의 기준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 제 7 조(수상대상자 선정)** 이사회에서는 포상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의 포상의 가부를 결정한다.
- 제 8 조(시상)** 1.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수여하되 공로상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수여 할 수 있다.
2. 수상자에게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7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